

수원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나8812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비즈

담당변호사 김연택

피고, 피항소인 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우

담당변호사 조준행

변 론 종 결 2021. 6. 3.

판 결 선 고 2021. 7. 22.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9. 16. 선고 2019가단10233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2.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45,433,63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433,6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2.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6. 3. 30. 접수 제384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는 제1심에서 위 재산분할계약의 전부 취소 및 원물반환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위 재산분할계약의 일부 취소 및 가액배상을 주위적 청구로, 위 재산분할계약의 전부 취소 및 원물반환을 예비적 청구로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구하고 있는 위 주위적 청구는 위 예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위 두 청구를 소송상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로 볼 수 없는바, 순서를 정한 선택적 청구로 보아서 판단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2.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6. 3. 30. 접수 제384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 F”을 “제1심 공동피고 F”으로, “피고 G”을 “피고”로, “피고들”을 “제1심 공동피고 F과 피고”로 각각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이유 제7면 제20행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제1심 공동피고 F이 회사원으로서 생계를 담당하였지만, 피고도 이혼할 때까지 가사에 종사하면서 재산증식에 유형무형으로 기여하였다.』

다. 제1심판결 이유 제8면 제14행 다음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제1심 공동피고 F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은 1999. 8. 16.인데, 그로부터 약 9년이 지난 2008. 7. 7. F의 주식회사 I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위 채무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채무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라. 제1심판결 이유 제8면 마지막 행 “그 금액 역시 상당한 이상,”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 금액 역시 상당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그곳에서 거주하는 피고로서는 위 채무를 변제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제1심판결 이유 제9면 제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⑤ 제1심 공동피고 F이 혼인기간 중 다른 여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그러한 상태가 상당한 기간 지속되다가 결국 이혼에까지 이르게 된 점, 피고가 이혼 후에도 두 자녀를 모두 책임지고 보살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행위는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준규, 판사 이승일, 판사 문유진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안양시 동안구 O에 있는 P아파트 Q동

[도로명주소] 안양시 동안구 R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슬래브 지붕 28층 아파트

1층 546.18㎡

2층 546.18㎡

3층 546.18㎡

4층 541.32㎡

5층 541.32㎡

6층 541.32㎡

7층 541.32㎡

8층 541.32㎡

9층 481.35㎡

10층 481.35㎡

11층 481.35㎡

12층 481.35㎡

13층 481.35㎡

14층 481.35㎡

15층 481.35㎡

16층 394.38㎡

17층 394.38㎡

18층 394.38㎡

19층 394.38㎡

20층 394.38㎡

21층 394.38㎡

22층 394.38㎡

23층 394.38㎡

24층 394.38㎡

25층 394.38㎡

26층 394.38㎡

27층 394.38㎡

28층 394.3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안양시 동안구 O 대 14,420.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1층 S호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84.96㎡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4,420.2분의 23.85. 끝.

